연구논문 2 DOI https://doi.org/10.35506/jspace.2020..27.002

전시체제기 식민지조선의 군사원호와 전몰자유가족* **

김현아 _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HK연구교수

목 차

Ⅰ. 머리말
Ⅱ. 조선군사후원연맹과 군사원호사업
Ⅲ. 군사부조법에 의한 군사원호
Ⅳ. 군사원호에 의한 전몰자유가족의 '정신교화'
Ⅴ.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식민지조선에서 실시된 군사원호사업을 군사부조법에 초점을 맞추어 육군특별지원병제도의 실시 전과 실시 후, 그리고 징병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의 군사원호에 대하여 추이를 살펴보는 데 있다. 특히 군사원호라는 미명하에 전몰자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화에 주목하였다. 육군특별지원병제도의 실시 전에는 조선에 거주하는 '내지인'=일본인 군인, '황군의 사기를 고무하기' 위해 출정 군인의 가족과 전몰자유가족에게 정신적 원호와 경제적 원호가 이루어졌다. 육군특별지원병제도의 실시 이후에 설치된 수산소의 목적은 '전몰자 미망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출정한 군인의 아내나 어머니들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2017S1A6A3A01079517).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음.

www.kci.go.kr

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전몰자유가족의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이 의도되었다. 징병제 시행을 앞두고는 조선에서 징병제가 시행되게 되면 조선인 징집대상자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군인 유가족에 대한 원호도 확충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조선인 전몰자유가족에 대한 정신교화를 중요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전몰자유가족에 대해 정신적, 경제적 원호를 지원한다는 목적하에 전몰자유가족을 황국신민화하고자 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식민지조선, 군사원호사업, 군사부조법, 군사원호, 전몰자유가족, 정신교화

Ⅰ. 머리말

조선총독부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즉시 지방의 행정 관청이 입영·응소군인의 가정에 대해 생활 상태를 조사하도록 하고'[1], 1917년 7월 20일에 공포한 군사구호법을 개정하여 1937년 3월 31일 시행한 내지=일본의 군사부조법에 근거해서 조선 내에 거주하는 '내지인'의 입영·응소군인가족에게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입영·응소군인의 가족 중에는 내연의 처와 같은 호적상의 문제로 군사부조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와 부모·숙부·조카 등 군사부조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생활이 곤란한 자가 다수 존재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총독부는 1937년 7월 24일 '관계 당국 및 각종 단체가 서로 제휴하고, 강력한 조직과 정연한 통제하에 조선이 일치단결하여 유효적절한 총후의 활동을 계속'[2]해 나아가 '황군의 사기를 고무

1)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37, p. 225.

www.kci.go.kr

하고 격려하여 후일의 걱정 없이 그 본분을 완수하도록 총후의 임무를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선군사후원연맹을 설립하였다. 각 도(道)에는 도 군사후원연맹, 각 부(府)·군(郡)·도(島)에는 분회(分會)로서 부·군·도 군사후원연맹이 설치되었다.[3)]

이듬해인 1938년 8월에 조선총독부는 출정군인과 그 가족, 전병사상(戰病死傷) 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원호를 제공하기 위해 1938년 5월에 개설한 '내지'의 군사원호중앙상담소에 해당하는 경기도 중앙군사원호상담소를 설치하였다. 1938년 12월에는 1938년 10월에 설립한 내지의 은사재단 군인원호회에 대응하는 은사재단 군인원호회조선본부를 설립하였으며 각 도에는 지부(支部), 각 부·군·도에는 분회를 설치하였다.

이렇듯 조선에서는 '내지'의 군사원호정책에 따라 1937년 3월에 군사부조법이 시행되어 먼저 '내지인' 출정군인과 그 가족, 전병사상 군인과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군사원호가 실시되었다. 그 이유는 이때까지 식민지조선의 경우 징병제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38년 4월에 조선에서 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시행되고, 1939년에는 육군특별지원병과 그 유가족에게, 1942년에는 조선인군속의 유가족에게 군사부조법이 적용되어 군사원호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징병제 시행으로 1944년에 전황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선인 입영자는 물론 조선인군속과 그 유가족들에게도 군사부조법에 의한 군사원호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추이를 통해 볼 때, 식민지조선에서의 군사부조법에 의한 군사원호는 ① 육군특별지원병제도의 실시 전과 ② 육군특별지원병제도의 실시 후 그리고 ③ 징병제도 공포 후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식민지조선에서의 군사원호정책을 규명하려

2) 朝鮮軍事後援聯盟, 『軍事後援聯盟事業要覽』, 1939, p. 3.
3) 주2)와 같음.

www.kci.go.kr

면 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의 군사원호 대상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육군특별지원병제도는 지원하는 방식이었고 징병제도는 징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군사원호의 상이성에도 주목하여 내용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민지조선에서의 군사원호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고찰한 연구는 없으며, 식민지조선에서의 군사원호를 전몰자유가족과 관련하여 고찰한 연구 또한 한국은 물론이며 일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윤정욱[4]은 경성부군사후원연맹이 실시한 군사원호사업의 활동내용에 관하여 대요를 서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않았다. 신영희[5]는 애국부인회의 군사원호사업의 활동내용을 살펴보고, '애국자녀단'의 설치는 황민화정책의 일환으로 '총후보국'을 목적으로 한 정신적 동원에 있었다고 논하고 있다. 그리고 박윤하[6]는 애국부인회 조선본부의 성격과 활동내용을 시기별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조선인 여성의 활동에 주목하여 검토하였다. 하지만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식민지조선에서의 군사원호사업이 군사부조법에 근거하여 출정군인과 전몰자유가족 등에 대한 군사원호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조선에서의 군사부조법에 의한 군사원호에 초점을 맞추고 첫째, 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어떠한 군사원호사업을 실시했는지, 둘째, 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실시된 후에 군사부조법에 의한 군사원호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셋째, 징병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신적 군사원호의 차원에서 전몰자유가족을 대상으로 어떠한 정신교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4) 尹㝡郁, 『植民地朝鮮における社会事業政策』, 大阪経済法科大学出版部, 1996, p. 242.
5) 신영희, 「전시체제기 애국부인회 조선본부의 군사후원사업과 애국자녀단」, 『지역과 역사』 30호, 2012.
6) 박윤하, 『식민지시기 '애국부인회조선본부'의 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www.kci.go.kr

Ⅱ. 조선군사후원연맹과 군사원호사업

중일전쟁이 장기화하는 양상을 띠게 되면서 총후=후방의 임무는 더욱 중대해졌고, 관계 당국과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총후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조선총독부는 총후후원과 관련하여 각 도의 실무자 회의를 열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군사부조의 관지(關知) 철저' '군사부조법에 의한 부조' '군사후원단체 등에 의한 부조' '출동 또는 응소군인의 가족과 유족의 직업 보지(保持) 알선' '군사후원연맹에 관한 건'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7] 그래서 조선군사후원연맹은 '일관된 수직적 연락과 각 가맹단체를 통한 수평적 연락체계를 완성하고 중앙 및 지방이 상호 연계하여 완벽하게 대응하는 총후 임무'[8]를 수행하는 군사원호사업에 주력하게 된다. 조선군사후원연맹의 주된 목적이 '더욱더 황군의 사기를 고무 진작시켜 후일의 염려 없이 그 본분을 완수하게 하는'[9] 것인 만큼 군사원호사업은 상이군인과 응소 및 출정한 군인의 가족, 전몰자유가족의 경제적 원호(부조, 직업알선) 및 정신적 원호(송영 · 접대, 위문, 격려, 조문)에 주안을 두고 있었다.

중일전쟁이 발생한 직후인 1937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조선군사후원연맹이 소집(召集)에 응하거나 출정한 군인의 가족, 전몰자유가족에게 실시한 군사원호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응소(應召) 및 출정군인의 유가족 위문에는 각 지역의 군사후원연맹이 가맹단체와 협력하여 위문하고, 위문품을 증정하였다. 또한 전몰자유가족 위안을 위해 수시로 위안회를 개최하였는데 총 72회나 되었다. ② 전몰자유가족에 대한 조위(弔慰)는 도 연맹을 통해 조선 내에 거주하는 유가족, 내지 일본으로 돌아

7) 『동아일보』 1937년 8월 28일자 2면.
8) 주2)와 같음.
9) 주2)와 같음.

www.kci.go.kr

간 유가족, 조선 외에 거주하는 유가족에게 조위금을 증정하였다. ③ 입영 및 응소군인 유가족의 부조는 전몰자유가족 중 생활이 곤궁한 자에 대한 구호로서 각 지역의 군사후원연맹을 통하여 군사부조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부조가 필요한 자, 군사부조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면서도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생활, 의료, 조산, 생업부조 또는 취학부조를 실시하였다.[10]

이처럼 조선군사후원연맹은 각 지역의 군사후원연맹과 가맹단체를 통하여 출정군인의 가족과 전몰자유가족에게 군사원호사업을 실시하였다. 조선군사후원연맹은 출정군인 가족과 전몰자유가족에 대한 정신적 원호로서 위문과 위문품 및 조위금을 증정하였으며, 위안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원호로서는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가 실시되었다. 이 당시 조선에서의 군사원호 대상자는 조선에 거주하였던 '내지인'=일본인 군인이었다.

그렇다면 조선군사후원연맹은 '내지인' 출정군인과 전병사상 군인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어떠한 군사원호사업을 실시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군사후원연맹 사업담당표」는 조선군사후원연맹에 가맹한 단체명과 사업 종목을 기록한 것이다.[11]

「조선군사후원연맹 사업담당표」를 보면, 군인후원회 · 일본적십자사 · 애국부인회 · 독지간호부인회 · 국방부인회 · 재향군인회 · 청년회를 비롯한 다양한 가맹단체가 '일반 국민에 대한 황군원호의 강화철저' '송영 · 접대' '위문 · 격려' '조문' '각종 신청서류 외 절차의 원조' '부조 대상자 조사' '생활부조' '의료 및 조산' '생업부조' 등과 같은 사업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가맹단체 중에서는 애국부인회 · 군인후원회 · 재향군인회 등이 두드러진 활동을 하였다. 군사원호사업으로는 '일반국민에 대한 황군원호의

10) 朝鮮総督府, 「朝鮮軍事後援聯盟ノ活動状況」, 『通報』 第18号, 1938.4, pp. 7~9.

11) 愛国婦人会朝鮮本部, 『北支事変に対する軍事後援事業要項』 1937.7, 1941; 민족문제연구소 편, 『총동원정책과 단체 4』,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52권, 2001, p. 242.

www.kci.go.kr

강화철저' '송영 · 접대' '위문 · 격려' '조문'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1937년 10월 15일자 『동아일보』 2면을 보면 "경성부에서는 경성군사후원연맹과 함께 출정용사와 응소하는 가족의 부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내무과, 사회과 직원을 동원하여 출정 · 응소 병사의 가족 수와 이동상태를 조사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도군사후원연맹은 어떠한 군사후원사업을 추진했는지 보도록 하자. 경기도군사후원연맹의 '각도별 군사후원사업 실시상황 조사'에 의하면 1937년 8월부터 1938년 12월까지 17개월 동안에 다음과 같은 군사후원사업이 실시되었다.[12)]

① '황군원호의 강화철저'를 위해 일반 민중에게 시국인식 · 군사원호사상의 보급을 철저히 도모함과 함께 경기도군사후원연맹사업에 대한 이해와 원조를 환기할 목적으로 강연회 · 영화회 · 제전(祭典) ·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② 조선에 원대(原隊)를 둔 사단 장병의 출정 또는 응소에는 '송별 · 접대'를 베풀었다. ③ '군인유가족의 위문'에는 위문품과 황군무운장구기원제 · 전몰병사의 위령제에 참석하여 위문 · 위자를 하였다. ④ '군인유가족위안회'에는 영화회 · 다과회 · 연주회 · 라쿠고(落語) · 만자이(漫才) · 로쿄쿠(浪曲) · 무용 같은 명랑하고 교훈적인 것을 소재로 한 오락위문을 실시하였다. ⑤ '현지에서의 군인위문'에는 향토부대 제20사단에서 북지(北支)에 파견한 장병을 위문하였다. ⑥ '조위금 증정'은 전상병사(戰傷兵死)군인의 유가족에게 '조선 내 · 내지 · 조선 외' 거주로 구분하여 지불하였다. ⑦ '공비피부조자(公費被扶助者)의 생활비보조'는 군사부조법에 의해 부조를 받으면서도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생활비를 보조하였다. ⑧ '공비(公費)를 받기 어려운 피부조자의 생활비급여'는 군사부조법의 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조금도 유자격자와 차이가 없는 사정, 환경 하에 있는 자'에 대한 생활부조금을 지급하였다. '내지'의 군사원호사업과 같은 내용의 군사후원사업이 조선군사후원연맹에 의해 적극적으

12) 주2) 『軍事後援聯盟事業要覽』, pp. 30~45.

www.kci.go.kr

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군사후원연맹은 '사실혼 관계이지만 법률상의 문제로 군사부조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공비(公費)를 받기 어려운 피부조자'를 대상으로 '생활부조'를 지급하였고, '부모 · 숙부 · 조카 등 군사부조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생활이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공비피부조자의 생활비보조'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조선군사후원연맹의 설립 목적인 '황군의 사기를 고무 격려하여서 후일의 걱정 없이 그 본분을 완수하도록 총후의 임무를 다하는'='출정군인 그 유가족에게 경제적인 원호를 제공하는' 군사원호사업이 실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경기도군사후원연맹은 '황군의 사기를 고무 진작'하기 위해 출정군인의 가족과 전몰자의 유가족에게 경제적 · 정신적 원호의 차원에서 군사원호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내지인 출정군인과 그 가족, 전몰자의 유가족에 대한 총후후원의 활동에 중점이 두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38년 3월 10일 육군기념일을 맞이하여 조선군사후원연맹은 각 도 지부에 다음과 같은 통첩을 발령했다.

1. 군사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군사원호사상의 보급을 도모할 것, 그리고 군사활동사진(필름)을 빌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0사단 사령부 알선
2. 육군해군 묘지의 청소
3. 적당한 방법으로 상병(傷兵)출정군인 유가족의 위안을 할 것
4. 기타 본 조선군사후원연맹의 사업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13]

이 통첩과 관련하여 1938년 3월 11일자 『매일신보』 2면을 보면, 경성

13) 『매일신보』 1938년 2월 26일자 2면.

www.kci.go.kr

군사후원연맹에서는 육군기념일에 '국방애국장교부인회 등의 후원으로 경성부 내 태평동 부민관에서 상이군인 및 출정군인 유가족의 밤을 개최하고 용산사단 장교의 시국강연과 영화를 상영하여 유가족을 위안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38년 3월 9일자 『매일신보』 4면은 '출정군인 유가족의 위안'을 위하여 애국부인회 경성부분회에서는 '황군위문일에 경성부 내의 전몰군인유가족을 일제히 방문하고 증정품과 함께 위문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조선의 군사원호사업은 조선군사후원연맹의 산하기관과 가맹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중일전쟁이 확대 국면에 접어들면서 군사원호사업도 확대되었다. 1938년 8월에 '내지'의 군사원호중앙상담소에 해당하는 경기도중앙군사원호상담소가 설치되었다.

> 경기도군사후원연맹에서는 장기전에 대처하여 군사원호사업의 완벽을 기하게 되어 이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바 금년도는 우선 30명 이상의 응소자를 낸 부군(府郡)에 군사원호상담소를 설치하고, 점차 이것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리하여 경성, 인천, 개성, 수원 등 4곳에 상담소를 설치, 도에는 상담부를 두고 사업으로서
>
> －출정유가족의 직업자금의 알선
>
> －상이군인의 직업알선
>
> －유족부조료의 알선교부 그 외 상이군인유가족의 상담에 응할 터인데 이 경비는 3분의 1을 국고보조에 의해 나머지를 군사후원연맹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14]

이 내용은 경기도군사후원연맹이 30명 이상의 응소자가 나온 경성·인천·개성·수원 4곳에 군사원호상담소를 설치하고, 군사원호사업으로서 '출정유가족의 직업자금의 알선' '상이군인의 직업알선' '유족부조료의

14) 『동아일보』 1938년 7월 18일자 2면.

www.kci.go.kr

알선교부 및 상이군인 유가족의 상담' 등을 실시하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직업자금 · 유족부조료의 알선이라는 경제적인 원조에 주안을 두는 군사원호가 개시되었다.

1939년 3월 28일자 『매일신보』 3면은 '출정군인 유가족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를 위해 소형주택 20호 정도를 건축해서 그들을 수용한 후 일정한 직업을 주어 생활을 보장시키고자 경성부회(府會)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출정군인 가족과 전몰군인 유가족에 대해 '유가족으로서 빈곤하여 집세를 내는 것이 곤란한 분 혹은 다른 사정으로 인해 일정한 장소에 수용되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주택을 건설해서 대여하며 직업의 보도(補導), 수산(授産)의 방도를 강구하고, 또는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등 유족의 수용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이미 실시의 단계가 되었다'[15]고 강조했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출정군인 · 전몰군인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 군사원호로서 소형주택의 건축과 직업알선이 추진되었다.

조선인군속과 육군특별지원병을 제외한 출정군인 · 전몰자유가족의 대다수는 조선에 거주하는 '내지인'이다. 집안의 가장이 소집에 응하게 되면서 어려운 생활에 처하게 된 출정군인 가족과 전몰자유가족이 다수 출현했다. 이에 따라 출정군인이 훗날을 걱정하지 않도록 남겨진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적 군사원호가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39년 7월 29일자 『매일신보』 2면은 후생성과 문부성에서 '이번 사변에 전사하거나 전상사한 군인과 군속의 처로 과부가 된 자로서 교육자가 될 수 있는 소질이나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갖는' 사람을 대상으로 '중등교원, 초등학교 교원, 유치원 보모'로서 임용하는 '양성소를 설치하는' 것과 조선에서도 이 양성소를 '9월 11일에 개설할 예정인데, 조선인의 군

15) 朝鮮總督府, 「戰没軍人遺族並に出征軍人家族の方へ」, 『同胞愛』 第17巻 8月号, 朝鮮社會事業協會, 1939, p. 25.

www.kci.go.kr

인 · 군속 미망인 또는 조선 내에 거주하는 유가족'은 입소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한 후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했다.

> 경성군사후원연맹에서는 군인 유가족 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일본 · 서양식 재봉, 수예, 편물 등 수산강습을 하여 재정수입의 증가를 꾀하는 동시에 총후(銃後)근로보국의 사상을 함양시키게 되어 그동안 군인 원호 수산소의 설치계획을 세우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 이번 약초정 본원사의 내부에 8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수산소를 개설하게 되었다. 우선 약 40명을 수용해서 수산을 개시하게 되고 기구와 재료는 부(府)에서 제공하고 일당 20전씩 지급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사람을 위해 탁아소를 만들게 되어 설비를 한층 확충해서 현재 수산강습을 원하고 있는 4백여 명의 유가족을 전부 수용시키게 될 터이다.[16]

전몰자유가족의 수입증가의 수단과 더불어 '총후근로보국의 사상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과부'='전몰자 미망인'에 대한 수산강습이 계획되었다. 이로부터 3개월 후인 12월 16일자 『매일신보』 3면은 '경성부군사후원연맹에서는 응소군인의 유가족에게 생업을 주기로 하고 부내 약초정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의 경내에 수산소를 설치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저 생활부조에 의해 생활하기보다'[17]는 '스스로 근로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힘써, 남의 본보기가 되어 전몰군인 유가족의 긍지를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18]는 생각이 있었다. 즉 '전몰자 미망인' 스스로가 근로하고 자립하여 출정한 군인의 아내나 어머니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 '전몰군인 유가족의 긍지'라고 생각되었다.

---

16) 『매일신보』 1939년 7월 29일자 3면.
17) 주15) 「戦没軍人遺族並に出征軍人家族の方へ」, p. 27.
18) 주15) 「戦没軍人遺族並に出征軍人家族の方へ」, p. 23.

www.kci.go.kr

Ⅲ. 군사부조법에 의한 군사원호

군사부조법은 군사원호사업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병역복무로 인해 생활이 곤란해진 자를 부조하여 군인에게 후일 걱정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근본 요지이다. 대상이 되는 자는 ① 상이군인과 그 가족 및 유가족 ② 현역군인 및 응소한 하사관의 가족 ③ 전몰자 및 전상병사 하사관의 유가족 등에게 생활, 의료, 생업, 조산, 매장, 재해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조를 행하는 것이다.[19] 그러나 응소군인의 가족 또는 유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호적상의 문제로 군사부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부조료 수급자이면서도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는 군사후원연맹 등의 군사원호단체가 부조를 하였다.

군사원호단체에 의한 원호대상자는 실제의 가계상태를 조사해서 적당하게 보급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20] 출정군인에 대한 생활 상황의 조사는 애국부인회가 '요부조자(要扶助者)의 조사'를 하였다. 애국부인회의 분구(分區)에서 조사부터 부조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① 매월 1회 이상 응소 또는 출정군인 가족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② 물자 그 외 원조가 필요한 경우는 구역 내 다른 공사(公私)단체와 협력하여 부조방법을 강구한다. ③ 만약 부조가 곤란한 경우는 분회에 군사부조조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분회는 분회 내의 군사후원연맹단체와 연락을 취하여 부조방법을 강구한다"[21]는 순서로 되어 있다.

또한 전병사한 군인유가족의 조사를 보면 애국부인회 분구는 "군부, 경찰관, 군사후원단체 등과 연락을 유지하고 전병사군인 유족의 유무에

19) 渡邊岩雄,「遺家族援護について」,『朝鮮事會事業』第20卷 第10号, 朝鮮事會事業協會, 1942.10, p. 14.

20) 주15)「戰没軍人遺族並に出征軍人家族の方へ」, p. 28.

21) 주11)『北支事変に対する軍事後援事業要領』, pp. 4~5; 민족문제연구소 편(2001), p. 41.

www.kci.go.kr

주의하며, 새로이 명부에 등록할 때는 사본을 분회에 제출하고 그 등록한 사항에 이동이 생겼을 때는 분회에 보고"[22]하였다. 그리고 '군인유족 (상이군인) 명부'에 의하면 부조의 연액, 유가족 관계, 생활 상황, 곤궁의 원인 등을 조사하였다.[23] 이들 조사항목은 생활부조, 의료, 조선, 생업부조를 전몰자유가족에게 해야 할지 판단하는 척도가 되었다.

〈표 1〉 응소자 수 및 제대자 수 등 조사 (9월 말 조사)

도명	응소자		제대자		전몰사자		현재응소자	
	인원	가족호수	인원	가족호수	인원	가족호수	인원	가족호수
경기	7,698 (8)	4,772 (8)	5,067 (5)	3,562 (5)	293	233	2338 (3)	987 (3)
충북	443 (1)	257 (1)	302	210	22	2	119 (1)	45 (1)
충남	1,233 (6)	742 (6)	1,028 (4)	600 (4)	42	25	163 (2)	98 (2)
전북	1,383	1,056	1,097	843	77	62	209	151
전남	1,826 (36)	1,177 (34)	1,441 (29)	910 (28)	68	41	317 (7)	209 (6)
경북	2,009 (10)	1,268 (10)	1,507 (9)	985 (9)	66	38	436 (1)	245 (1)
경남	3,803 (11)	2,831 (10)	2,656 (10)	2,085 (10)	155	112	992 (1)	586
황해	1,389 (39)	649 (39)	982 (30)	482 (30)	82	26	325 (9)	145 (9)
평남	2,233	1,055	1,378	759	139	58	716	238
평북	1,164 (7)	505 (7)	789 (1)	305 (1)	85	25	290 (6)	144 (6)
강원	922 (15)	613 (15)	714 (10)	483 (10)	4	2	214 (5)	128 (5)
함남	3,236 (15)	1,938 (15)	2,493 (15)	18 (15)	18	18	725	466
함북	2,926	1,541	2,313	1,156	8	8	605	377
합계	30,275 (148)	18,404 (145)	21,767 (113)	12,388 (112)	1,059	650	7,449 (35)	3,819 (33)

괄호 안은 특별지원병자료에 의해 작성.

자료: 朝鮮総督府厚生局, 「昭和16年12月 第79回帝国議会説明資料」, 『朝鮮総督府帝国議会説明資料』, 不二出版, 1994, pp. 265~266.

〈표 1〉은 '태평양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의 1941년 9월 말 시점에서 '응소자 수 및 제대자 수 등 조사'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다음의 다

22) 愛国婦人会朝鮮本部, 「愛国婦人会朝鮮本部分区事務取扱手続」, 『分区班制実施の栞』, 1937, p. 18; 민족문제연구소 편(2001), p. 105.

23) 주22) 「愛国婦人会朝鮮本部分区事務取扱手続」, pp.21~22; 민족문제연구소 편(2001), p. 108.

www.kci.go.kr

섯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① 조선 내에서 '중일전쟁에 의해 응소한 자의 총인원 수'는 30,275명이고, 그중 소집해제(제대) 자는 21,767명, 전몰자는 1,059명, 조선에 잔류하는 유가족의 세대수는 650호, 현재 응소자 수는 7,449명이다.

② 육군특별지원병에 관련해서는 응소자는 148명이고, 제대자 113명을 제외한 35명이 현재 응소 중이다.

③ 조선에서 현재 응소 중인 7449명에서 육군특별지원병 35명을 뺀 7,414명 중 조선 내에 거주하는 '내지인' 응소자 가족 세대수는 3,786(3819호-33호)이다.

④ 전몰자 1,059명 가운데 조선 내에 거주하는 '내지인' 전몰자유가족은 650세대이다.

⑤ 군사부조법이 적용되는 조선인 대상자는 육군특별지원병의 응소자 148명 (145세대)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군사부조법에 의한 군사원호의 대상은 육군특별지원병 가족 145세대와 조선 내에 거주하는 '내지인' 응소자가족 3,786세대, 그리고 전몰자유가족 650세대임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1941년 9월 말 응소자 수는 조선 전체 13개 도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많은 2,338명(그 중 육군특별지원병 응소자는 3명)이고,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내지인 응소자가족은 987세대이다. 전몰자 293명 가운데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유가족은 233세대이다. 이 점에서 '내지인'은 응소자가족과 전몰자유가족을 포함한 1,220세대가 군사원호의 대상이 되지만, 조선인 군사원호 대상자는 육군특별지원병 3명에 불과하다. 요컨대 1941년 9월 말 현시점에서 경기도의 군사원호 대상자 대부분은 '내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군사부조법에 의한 군사원호는 어떻게 실시되었

www.kci.go.kr

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 2〉 군사부조법에 의한 부조에 관한 조사 (1941년 9월 30일 누계)

도명	응소자수	생활부조		의료		조산		매장		생업부조		계		부조금액
		호수	인원	호수	인원	호수	인원	호수	인원	호수	인원	호수	인원	
경기	7,698	입 91 응 154 전 35 상 15	302 415 99 34	13 (45)	13 (45)	(1)	(1)	1(3)	1(3)			309 (49)	868 (49)	64,863.66
충북	443	입 9 응 14 전 상 1	21 47 4	(2)	(2)			(2)	(2)			24(4)	72(4)	3,990.20
충남	1,333	입 17 응 18 전 3 상 2	58 40 12 2	5(4)	8(4)					(1)	(1)	45(5)	120 (5)	7,611.18
전북	1,383	입 48 응 75 전 18 상 3	239 230 80 22	3(3)	4(4)							147 (3)	565 (4)	33,705.39
전남	1,826	입 43 응 61 전 22 상 3	204 187 102 12	11(2)	11(2)							140 (2)	516 (2)	25,670.05
경북	2,009	입 38 응 63 전 5 상 3	115 175 23 7	4(32)	4(32)	(1)	(1)	(4)	(4)	1(1)	1(1)	114 (38)	325 (38)	22,774.76
경남	3,803	입 74 응 154 전 5 상 20	262 445 21 74	23 (73)	26 (128)	(1)	(1)	(10)	(10)			276 (94)	828 (139)	55,898.61
황해	1,389	입 6 응 12 전 4 상 1	20 23 11 1							(1)	(1)	23(1)	55(1)	4,280.34
평남	2,233	입 12 응 31 전 9 상	53 66 17	8(10)	8(11)			(1)	(1)			60 (11)	144 (12)	15,410.52

www.kci.go.kr

평북	1,164	입 2 응 5 전 상	12 10			(1)	(1)	(1)	(1)			7(2)	22(2)	1,599.66
강원	932	입 6 응 10 전 2 상	17 32 6	(1)	(1)							18(1)	55(1)	3,295.14
함남	3,336	입 4 응 2 전 3 상	7 6 3 1	(2)	(2)							10(2)	18(2)	1,457.59
함북	2,926	입 5 응 9 전 1 상	21 16 1	2	2							17	40	3,105.52
계	30,275	입 355 응 608 전 107 상 49	1,321 1,696 375 158	69 (174)	76 (231)	(4)	(4)	1(21)	1(21)	1(3)	1(3)	1,190 (202)	3,628 (259)	243,662.62
합계	30,275	1,119	3,550											

비고 1. 생활부조의 입, 응, 전, 상은 각각 입영, 응소, 전몰, 상이의 약칭이다.
2. 괄호 안의 숫자는 생활부조와 병합한 자의 숫자이다.

자료: 朝鮮総督府厚生省, 「昭和16年12月 第79回帝国議会説明資料」, 『朝鮮総督府帝国議会説明資料』, 不二出版, 1994, p.267.

〈표 2〉는 조선 내에서의 군사부조법에 의한 부조 상황을 조사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1941년 9월 말 현재의 누계로 보면 중일전쟁에 의해 소집을 받은 총인원 수는 7,698명이다. 이 가운데 '생활부조'는 입영자·응소자·전몰자·상이군인을 포함하여 295세대(850명), 의료는 58세대(58명), 조산은 1세대(1명), 매장은 4세대(4명)이다. 그리고 309세대(868명)에 대해 64,863엔 66전의 부조금이 지급되었다. '생활부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1941년 시점까지 조선에서의 군사원호 대상자는 소수의 육군특별지원병을 제외한 대부분이 내지인이었다. 조선의 군사원호사업은 군사부조법의 운영에 따르는 생활부조가 중심이었다. 군인유가족에 대한

www.kci.go.kr

군사원호는 내지의 방침에 호응하여 1938년 11월 내지에 은사재단 군인원호회(이하, 군인원호회)가 설립되자 같은 해 12월에 군인원호회조선본부를 설치하여 군사원호를 실시해 왔다.[24]

1942년 6월 26일에 군인원호회 경성부분회는 부민관에서 군인원호좌담회를 개최하고, 경성부분회가 부내에 거주하는 전몰자유가족에게 생활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금보다 직업을 알선함'과 함께 '조선 내의 유족 수산산업은 빈약하므로 확충 강화할 것'을 협의하였다.[25]

> 경성부에서는 군인유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수산소의 대확충을 단행하기로 하고 총공비 6만 6천 원을 들여 현재 黃金町에 있는 경성군사원호수산장을 충족하기로 되었다. 이 증축공사는 근근 착수하여 늦어도 금추에 완성할 예정인데 이게 준공되면 동수산소에 새로이 手藝科를 설치하고 유가족들을 수용하고 수예 일반을 습득시켜 생활의 자립의 길을 열게 하는데 한 도움이 되게 하리라 한다. 더욱이 시국이 장기화됨에 따라 충용한 황군장병들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그 유족들의 생활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이 수산사업은 군사원호의 가장 주요한 관제로 제시되어있는 만큼 본부 당국에서는 경성부의 수산소를 장차 전선적인 규모 밑에 중앙수산소로 승격 강화하여 전선 각지의 군인유족수산사업의 한 지표가 되게 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26]

내용을 보면 ① '충량한 황군장병'의 '후일의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군인유가족의 생활안정'이 중요하고, ② 유가족에게 '생활 자립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군사원호 수산소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수산사업이 군사원호의 가장 주

24) 『매일신보』 1944년 8월 1일자 2면.
25) 『매일신보』 1942년 6월 27일자 3면.
26) 주25)와 같음.

www.kci.go.kr

요한 관제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부분이다. 출정군인이 '후일의 염려' 없이 '진충보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가족의 수산 · 수직이라는 경제적인 군사원호가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생활의 자립'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자립'은 경제적인 자립도 물론이거니와 '과부'가 남편을 대신하여 '명예로운 가문'을 지켜가는 정신적인 자립이라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이점에 관하여 경기도 사회과장은 "수산 · 수직은 전몰장병의 위훈을 칭송하고, 이들 전몰자유가족에게 생활상의 불안이 없도록 하며 또한 용사에게 후일의 염려를 없게 하여 사기를 저하하는 일이 없도록 독립 독행(獨行)의 정신을 견지하여 전몰자유가족으로서 책무를 완수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부'에게는 '독립 독행의 정신을 견지'하는 것이 강하게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좌담회에서는 '징용령에 의한 군속은 물론 포로감시 또는 남방의 개발을 위하여 파견된 군 촉탁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군인과 같은 방법으로 원호를 해야 한다'고 협의하였다.[27] 이 점에서 태평양전쟁이 시작되고 조선인군속의 전병사자가 증가하면서 조선인군속에 대한 군사원호가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인군속에게 어떠한 군사원호가 계획되었던 것일까.

> 육해군의 작업요원으로서 남방 기타 전지에 근무 중 전사병사하는 반도인 군속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정세이므로 이들 전몰군속의 유족에 대한 부조에 관해서는 국고보조에 의해 은사재단군인원호회도지부로 하여금 군사부조와 동일하게 생활부조의 방도를 강구한다(부조지급 한도액은 군사부조의 한도액 이내). 또한 의료, 조산, 매장, 생업원호 기타 재해 등에 의해 일시적인 부조가 필요한 경우도 군사부조에 준하여 부조하

27) 주25)와 같음.

www.kci.go.kr

도록 한다. 그 외 유족의 직업 보도 및 유아의 육영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군인유족에 대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유감없이 하도록 하고 있다.[28]

즉, '반도인 군속'의 유가족에 대해 군인원호회 도지부에서 ① 군사부조와 같은 생활부조 ② 의료 · 조산 · 매장 · 생업원호 등에 대해서는 군사부조에 준하는 부조 ③ 유가족의 직업보도와 유아의 육영 등에 관련해서는 '일반 군인 유족'과 다름없는 부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군인, 군속의 유족과 가족을 우대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비로 조선 내의 주요 부에 유가족 주택과 모자료를 설치하여서 유족이나 가족 중에 집세를 내는 것이 어려운 자를 수용하여 보호하고, 또한 수산소를 설치하여 수직, 수산에 임하도록 하였다."[29]

이와 관련하여 경성부는 '출정 가족을 위해 약 백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모자료 및 탁아소의 건설과 유가족 주택의 증축, 건강상담소의 독립과 내용의 충실, 군사원호상담소의 기능을 발휘, 또한 현재의 수산소를 제1부 내지인 수산소로 하고, 반도인을 수용하는 제2부 수산소를 건설하여 반도인 유가족에 대한 수산과 생활의 보증, 취직의 알선' 등을 포함한 군사원호사업의 확대를 계획하였다. 조선인군속 유가족에 대해서도 군사원호를 실시함으로써 '내지인' 출정군인과 육군특별지원병과 다름없이 조선인군속 유가족에게도 황국신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원호와 함께 정신적 원호가 전몰자유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도되었다.

경성군사후원연맹에서는 금년도사업의 하나로서 부내에 거주하는 전몰군인과 군속의 유족들을 오는 17일 경춘철도 연선의 퇴계원에 초대하

28) 朝鮮総督府, 「昭和19年12月 第86回帝国議会説明資料」, 『朝鮮総督府帝国議会説明資料』 第10巻, 不二出版, 1994, p. 68.

29) 渡邊岩雄(1942), p. 15.

www.kci.go.kr

고, 지금은 호국의 영령이 된 전몰용사를 함께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 하루 유쾌한 위안을 제공하게 되었다. 일정은 성동역에서 오전 9시 5분에 출발하여 오후 4시 50분 퇴계원 발 열차로 돌아올 예정이지만 이번 원유회는 주로 운동경기를 하게 해서 종목에도 적전상륙공중전(敵前上陸空中戰) 또는 총후봉공 등 유가족 놀이의 새로운 풍경을 그릴 터이다.[30]

경성군사후원연맹이 '전몰군인과 군속의 유가족들'을 퇴계원에 초대하여 '호국의 영령이 된 전몰용사를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 1일 유쾌한 위안을 제공하는' 원유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원유회에서 '적전상륙공중전'이라는 운동경기와 '총후봉공 같은 유가족 놀이'를 했다는 사실이다. 전몰자유가족에게 원유회라고 하는 '유쾌하게 괴로움을 잊게 하는 방면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연성수양의 기회'로 삼는 것이 의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인원호회 경성부분회의 『원호회일지초(援護会日誌抄)』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표 3〉은 군인원호회 경성부분회가 실시한 군사원호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군인원호회 경성부분회 『援護会日誌抄』 (1942년 6월~12월까지)

년월일	내 용
1942년 6월 1일	응평상회에서 휼병금으로 천원을 기부하다.
3일	오늘 오후 6시부터 상이군인가족위안운동회 임원회의를 수산소에서 개최하다.
10일	수산소에서 전시요리 강습회를 개최, 오후 2시부터 신모토(新本) 강사, 수산소 방문하여 개강(開講)
11일	군사령부에서 수산소를 시찰하러 방문하다.
17일	도쿄오즈모(東京大相撲) 경성바소(京城場所)의 초대권을 유가족, 상이군인에게 발송하다.
22일	상이군인 및 각 지도원에게 경전(京電)에서 승차우대권을 기증하다

30) 『매일신보』 1941년 5월 14일자 2면.

www.kci.go.kr

25일	일만상사(日滿商事)회사에서 1만1천 원, 국산자동차회사에서 2천 원을, 원호회사업자금으로 기부하다.
26일	군사원호좌담회를 부민관 중강당에서 개최하다. 출석자 50명
28일	유족월례회를 수산소에서 개최, 와타나베(渡邊)기사(技師), 은급금고지점장, 경성헌병분대장 등의 훈화를 경청하다.
29일	부조료 지불
7월 4일	오전 11시. 수산소 타이프라이터과의 입소식을 하다.
6일	경성부 권업과, 다카하시(高橋)기사로부터 휼병금으로 천 원을 기부받다.
7일	경성일보사·경성부 주최, 무적 황군을 찬양하는 모임을 경성운동장에서 개최하다.
17일	전몰장사의 대추도회를 훈련원 부민회장에서 개최하다.
20일	본회 부분회장 센다(千田)단장 일행의 위문단 경성'와라와시다이(笑わし隊, 만담위문단)' 일행 오늘 출발○○로
24일	함남도청에서 경성원호회사업 시찰하러 수산소를 방문하다.
25일	모자료설계 건을 영업과, 요시다(吉田) 기사와 협의하다.
30일	부조료 지불
8월 3일	군인유족배지 전달식을 부청(府廳) 4층 본관에서 거행하다.
15일	상이군인임원회 및 정기모임을 수산소에서 개최, 다나카(田中) 내무과장이 신임 임원에게 사령(辭令)을 교부하다.
23일	유족월례회를 개최하다.
9월 3일	상이군인독행자(篤行者) 표창 간담회를 개최, 독행자 8명을 내신(內申)하다.
5일	상이군인임원회를 오후 6시부터 수산소에서 개최하다.
8일	위문단 보국위안회의 초대권을 각 출정군인 유가족에게 발송하다.
12일	위문단 보국위안회를 부민관 대강당에서 주야 개최하다.
15일	오후 7시부터 체신사업회관에서 상이군인회, 부회장, 와나미(和波) 중장의 강연회 개최
16일	수산소에서 개강 중이었던 전시요리 강습회의 수료식을 오후 1시부터 거행하다.
19일	군인원호강화운동실시에 관한 회의를 센다 부장실에서 개최하다. 상이군인 임시 정기모임을 수산소에서 개최하다.
21일	원호회 주최의 이치카와엔노스케(市川猿之助) 극단이 부민관 대강당에서 공연하고 유가족을 초대하다.
22일	오쿠라(大倉) 시종무관 경성에 도착
23일	오쿠라 시종무관, 수산소 시찰, 부민관에서 공연 중인 엔노스케공연에 육군병원입원용사, 상이군인, 유가족 등을 초대하다.
26일	수산소 강습생 수료식을 거행, 와사이(和裁, 기모노)과 제8회, 양재, 타이프라이터과 각 제9회째 수료식을 하다.
10월 2일	수산소 입소식을 거행하다.

www.kci.go.kr

3일	모범 상이군인과 유가족 선행자의 표창식을 부민관에서 거행하다. 유가족보건증강위안회를 창경원에서 개최하다. 부윤 인사 후 총력연맹의 가미시바이(紙芝居, 그림연극), 시음(詩吟), 검무, 일본무용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오후 4시 종료
5일	상이군인임원회를 수산소에서 개최하다.
6일	경기도청에서 군인원호 관계자의 표창식을 거행하다.
8일	이번 달 3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군인원호강화운동의 최종일인 오늘 강연회와 영화 상영에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유가족을 부민관에 초대하다.
9일	부민관에서 공연 중인 태양극단에 유족과 상이군인을 초대하다.
11일	야스쿠니신사 합사제에 유족이 참배하러 출발, 경성부 후생국장, 이하 군, 사단, 경성부의 각 대표자 경성역에서 배웅하다.
15일	상이군인 정기모임 및 임원회를 개최하다.
16일	상이군인회 주최로 황군장병의 무운장구, 대동아전쟁 완수기원제를 오전 8시 경성신사에서 거행하다.
18일	해군협회에서 파견 중인 위문단, 오늘 경성에 도착
25일	유족보건증강위안회를 독지가의 별장에서 밤 줍기를 하다.
11월 5일	상이군인임원회를 개최하다.
10일	야스쿠니신사 참배의 상이군인 출발하다. 제대자의 취직알선을 협의하다. 수산소 생도 창경원으로 소풍을 가다.
15일	상이군인 정기모임을 수산소에서 개최하다.
17일	헌납 비행기의 명명식을 연병장에서 거행, 과장 이하 다수 참석
28일	병제(兵制) 70주년 기념식전을 경성운동장에서 거행하다.
29일	전몰군인가족의 어머니, 아내의 모임을 반도호텔에서 개최하다. 센다 총무부장의 강연이 있고 오후 2시 해산하다.
30일	경전(京電)에서 상이군인 우대승차권을 교부하다.
12월 3일	안전하나오(鼻緒, 게다 끈)강습회를 수산소에서 개최하다.
5일	소책자 총후의 경성을 발송하다.
8일	대동아전, 1주년 기념일, 조선신궁에서 기념식전을 거행하다.
10일	식산(殖産)은행에서 원호사업자금으로 1만3천7백 원의 기증을 받다.
14일	부민관에서 상연 중인 의사회(義士會) 주최의 '추신구라(忠臣蔵)' 영화에 유족, 상이군인을 초대하다.
15일	유족임원회를 개최하다.
24일	수산소, 타이프라이터과 수료식을 거행하다.

자료: 軍人援護会京城府分會, 『京城だより』, 1944, pp.5~19에서 인용하여 작성.

〈표 3〉의 내용을 보면 수산소를 거점으로 ① 상이군인임원회 · 정기모임 · 월례회와 유족월례회 개최, ② 전몰자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군사

www.kci.go.kr

원호는 영화 · 연극 · 연예회 등을 통한 위문 · 위안, ③ '전몰자 영령'의 위령 · 추도, 강연 · 훈화 등에 의한 '연성수양'의 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에서의 군사원호는 생업부조에 의한 경제적 원호가 중심이 되면서도 정신적 원호인 '위문 · 위안'과 강연 · 훈화와 같은 '연성수양'이 상호연계되어 전몰자유가족을 대상으로 '정신교화'가 이루어졌다.

Ⅳ. 군사원호에 의한 전몰자유가족의 '정신교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인해 출정 또는 응소군인의 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전몰군인 및 상이군인, 그리고 그 유가족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태평양전쟁 발발 이래 다수의 반도인이 군속 신분으로 전몰하여 이들 유가족에게도 군인유가족과 마찬가지로 원호를 하게 됨으로써 군사원호강화의 확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31] 하지만 조선에서 군사원호강화가 한층 확대되어가는 직접적인 계기는 징병제실시에 있었다.

1942년 5월에 일본 정부는 조선에서 징병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각의(閣議) 결정하고, 1943년 3월 1일에 '병역법중개정법률(법률 제4호)'에 의해 징병제 시행을 공포하였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1943년도에는 징병제 시행에 대해서 연구를 하여 1944년 4월 1일부터 8월 20일에 걸쳐 조선 전 지역에서 징병검사를 하기로 하고, "징병검사가 종료되면 징병제 시행 후 첫 현역병 채용자는 1944년 9월 1일 이후부터 1945년 5월 사이에 입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32]

---

31) 「軍人援護強化に関する座談会」, 『朝鮮社会事業』 第21卷 第10号, 朝鮮社会事業協會, 1943.10, p.12; 戦前 · 戦中期アジア研究資料1 『植民地社会事業関係資料集』 朝鮮編 38, 社会事業政策ー軍事援護事業2, 近現代資料刊行会, 2000, p. 352.

www.kci.go.kr

징병제실시가 공포된 후 군인원호회조선본부는 1943년 9월 23일 부민관 소강당에서 '군인원호강화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군인원호회 조선본부 상무이사 나가이(永井) 사회과장은 징병제실시와 군사원호강화의 관련성에 대해 "1944년도부터는 징병제도의 시행으로 징병자는 당연히 반도 전체에서 상당수에 달할 것이고 그 결과 군인원호 대상자는 상당히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총독부 및 도부군(道府郡)에서는 군인원호기구 등 기타 제반(諸般)의 획기적인 확충강화가 필요하다"[33]고 발언하였다.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군사원호가 확충된 주된 이유는 1944년도부터 조선에서 징병제가 시행되면 '징집자의 증가와 함께 군인원호 대상자 또한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출정·응소군인의 증가로 인한 전몰자의 증가는 군인 유가족에 대한 원호의 증대로 이어지므로 군인원호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군인 유가족의 정신적 원호의 측면에서 정신교화도 중요시되었다.

징병제도의 실시로 인해 확충되는 군사원호에 대한 화제로부터 시작된 좌담회에서도 가장 주목하는 것은 '출정 또는 응소군인 아내의 정신지도'와 '과부의 정신지도'라는 '아내'와 '과부'에 대한 '정신교화'였다. '군인원호강화에 관한 좌담회'에 참석한 누카가(額賀) 조선신궁 구지(宮司)는 '과부의 정신지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했다.

> 용사의 어머니, 용사의 아내는 소중한 남편, 자식을 호국의 신으로 바치고, 야스쿠니의 신으로 바쳐서 영구히 제국을 지키는 존엄한 존재가 되어 있으므로 이 호국 신의 정신을 받은 자는 남아있는 어머니이며 아내이다. 따라서 호국 신의 정신을 즉 유족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다행

32) 朝鮮総督府, 「昭和19年12月 第86回帝国議会説明資料」, 『朝鮮総督府帝国議会説明資料』 第10巻, 不二出版, 1994, p. 89.

33) 주31)과 같음.

www.kci.go.kr

히 우리 조선에는 매우 가까운 장래에 호국신사의 진좌제도 있으므로 이에 호국부인회와 같은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더욱이 정신으로 나중에 있을 반도의 사나운 독수리 철우(鐵牛) 부대의 정신적인 지도 등 여러 활동을 부탁한다면 단순한 부인회보다도 매우 힘 있는 단체가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호국신사의 진좌제가 있게 되면 그 관계하는 분들과 상담하여 제신의 반면(半面)과 같은 분들에게 후진(後進)의 용사를 선도하는 큰 책임을 갖도록 부탁드리고 싶다.[34]

'호국 신의 정신을 받은 자는 남아있는 어머니이며 아내'라는 말에 상징되듯이 전몰군인의 어머니나 아내는 '야스쿠니의 신', '호국의 신'의 '반면'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부'가 호국신사의 진자제와 '호국부인회'에서 '후진의 용사를 선도'하도록 '정신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국 신의 정신'은 '유족의 정신'이기 때문에 '호국의 신'의 '반면'인 '과부'에게는 '후진의 용사를 선도하는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경성 혼간지(本願寺) 별원(別院)의 구쓰와다(轡田補番)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부족한 경험에서입니다만, 자기 가족에서 영령이 나왔던 여자인 분 중에 때로는 매우 위험한 정신상태에 처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물론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내지 조선을 돌아다니면 가끔 이와 같은 일종의 정신착란에 빠지거나 혹은 가정분쟁이 있거나 혹은 일신상의 좋지 않은 품행을 하는 듯한 영령에 대해서 미안함을 갖게 하는 그런 사실을 듣는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대체로 그러한 것은 하나의 긍지를 잃고 있다. 긍지를 잊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긍지를 언제까지나 계속 갖는 기회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34) 주31)「軍人援護強化に関する座談会」, p. 17;『植民地社会事業関係資料集』, p. 357.

www.kci.go.kr

된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다.[35]

조선의 전몰자 미망인 가운데는 '착란상태에 빠지거나' '가정쟁의가 있거나' '일신상의 좋지 않은 행동'을 하여 '영령에 대해 미안함을 갖게 하는 그런 사실을 듣고'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전몰자유가족으로서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 전몰자유가족이 '긍지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긍지'의 계속성이 거론되었다. '긍지'의 계속성이란 전몰자 유가족에 대한 정신적 원호를 계속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1944년 4월 징병제 시행을 앞두고 군사원호강화를 위해서 전몰자유가족 중에서도 과부의 정신적 원호 차원에서 정신적 교화에 대한 문제가 중요시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지와 마찬가지로 출정군인이 후일의 염려를 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자료(母子寮)는 정신적 교화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유가족 생활지도의 관점에서 유가족의 가정은 개별적으로 있는 것보다 집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그 가족을 보호하는 점에서 능률적이라고 생각된다. 그와 동시에 그 지도가 좋으면 생활의 질적 향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취사, 공동근로 등 여러 가지 공동생활의 체험으로 어머니들의 개인 생활을 단련하여 종래의 개인주의적인 무계획 무방침의 생활 태도를 혁신시키고, 정말로 전몰자유가족의 긍지를 갖게 하여 근로에 힘쓰게 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36]고 들고 있다.

그렇다면 모자료에서 출정군인의 아내와 전몰자 미망인에 대해서 어

35) 주34)와 같음.

36) 金子しげり, 「遺家族の生活指導」, 『同胞愛』 第17巻 9月号, 朝鮮社会事業協会, 1939, p. 41.

www.kci.go.kr

떠한 정신교화가 이루어졌는가. 대일본부인회조선본부 후지에(藤江) 상무이사가 모자료에서 '출정 · 응소군인의 아내를 정신적 지도를 하는 데 있어 효과 있는 방책에 대해서'[37] 발언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출정 · 응소군인의 모자와 유족'이 생활하고 있는 모자료에 '남자 방문자'가 있을 때 '모자료의 방안에는 일절 출입을 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출정군인의 아내와 전몰자 미망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하고 남자 방문자를 '목격한 다른 부인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문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그 방책으로서 '외부에서 무슨 요건으로 방문할 때, 혹은 원호회에서 무슨 위문을 받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부인이 방문하는' 것이 강구되었다. 내면의 것까지 신경을 쓰는 배경에는 '남편이 출정 또는 응소로 장기간 부재중'으로 인해 '신경질을 내는 사람'도 있고, 외출하였다가 '일가가 단란한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지는' 출정군인의 아내와 전몰자 미망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후지에 상무이사는 "위안회에서 연극이나 영화를 보여주는 데 있어 내용이 선정적인 것에는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38]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성부 센다(千田) 총무부장은 "정신적인 방면의 원호 또는 위안을 주고, 연성수양의 기회와 유쾌하게 고생을 잊을 수 있는 방면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39]는 의견을 말한다.

그리고 전몰자유가족에게 군사원호라는 방법으로 '정신교화'에 의한 경제적, 정신적 원호를 제공하는 한편 징병 대상이 되는 조선인 남자에 대한 황국신민화가 의도되었다.

---

37) 주31)「軍人援護強化に関する座談会」, p.18;『植民地社会事業関係資料集』, p. 358.
38) 주31)「軍人援護強化に関する座談会」, p.19;『植民地社会事業関係資料集』, p. 359.
39) 주34)와 같음.

www.kci.go.kr

> 최근에는 반도인 학생에 대한 임시특별지원병채용제도, 중등학교 생도에 대한 특별간부후보생 채용제도가 창설되어 이미 다수의 반도인 생도가 입영했을 뿐만 아니라 1944년도부터 반도인에 대해서도 징병제도가 실시된 결과 앞으로 군사부조의 대상자 수는 해마다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예측되고, 또한 1945년도 이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는 조선인 장정 중에 그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출신자는 가계(家計)가 대체로 부유하지 않으므로 그 가족의 원호를 할 때는 군사부조법의 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40]

이와 같은 사실에서 징병검사를 마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조선인 장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조선농촌 출신자에 대한 군사원호가 큰 과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치재일기(致齋日記)』[41]의 내용을 인용하면, 1944년 9월 25일 일기에는 "양우가 말하길 독자 상민이 징병에 응할 적령이라서 부를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집안일의 생산 작업을 할 수 없게 된다(亮雨曰獨子相敏徵兵應適齡, 召之日在, 即家事之生産作業未可)"고 적고 있다. 그리고 1945년 5월 17일 일기는 "동리 안의 남녀노소는 일제히 이상민이 길을 떠나는 것을 전별했고 … 상민의 아버지는 70세인데 아들이 하나뿐이고 손자가 없다(里中男女老少一齊餞別于李相敏之發程, 然相敏之大人七十之年獨子無孫)"고 기록하고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경기도 사회과 사무계 이치무라 코시로(市村幸四郎)는 "입영을 앞둔 아들과 늙은 부모만 있는 가정에서 아들이 출정하

40) 주32) 「昭和19年12月 第86回帝国議会説明資料」, pp. 63~64.

4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치재일기』는 1911년부터 1962년까지 유생(儒生) 김인수가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작성한 일기이지만 근현대사의 시대상(時代相)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치재일기&ridx=0&tot=399 (검색: 2020. 6. 11.)

www.kci.go.kr

면 가정의 생계를 어떻게 도모해나가느냐고 근심 걱정하는 일이 많은데 … 애국반에서는 애국반장 등이 솔선수범해서 군인원호회의 참된 취지를 설명하여 마음 놓고 아들을 입영시킬 수 있도록 … 군인의 가정에 아무 뒷걱정 없게 하자는 것이 군사원호의 본뜻이다"[42]고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조선에서의 군사원호는 징병제실시와 함께 당면 과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군인원호회는 1944년 7월에 '군인원호 및 징병후원사업의 강화철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총후봉공회를 설립하였다.

> 은사재단 군인원호회조선본부, 각 도지부 및 부군도(府郡島)분회의 사업으로 징병제의 실시에 대응하여 만에 하나라도 유감이 없도록 하려면 더욱 그 말단기구를 정비 강화하고, 조선 전체 2천 6백만 관민이 똘똘 뭉쳐서 정말로 총후봉공의 완벽과 군인원호의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생각되어 1944년 7월에 새로이 조선의 국민총력부읍면연맹에 총후봉공회를 설치하였다. 사실상 은사재단 군인원호회조선본부의 최하위조직으로 하고, 또한 동시에 국민총력조선연맹 징병후원사업부 최하부 조직으로 하여 군인원호 및 징병후원사업의 강화철저를 도모하게 되었다.[43]

이처럼 조선에서는 '내지' 보다 5년 6개월 늦게 총후봉공회가 설립되었다. 1944년 9월 1일자 『매일신보』 4면에는 9월 9일에 설립되는 경성 종로구 총후봉공회에 대해서 "경성 종로구에서는 징병제에 따라 출정군인의 유가족을 지키고 훗날 걱정이 없도록 총후봉공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만 엔의 돈을 모아서 이것을 자본금으로 군인 유가족을 돌보고,

42) 『매일신보』 1944년 9월 16일자 2면.
43) 주32) 「昭和19年12月 第86回帝国議会説明資料」, p. 69.

www.kci.go.kr

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결코 생활에 염려가 없도록 조처를 해주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내용을 보면 총후봉공회는 징병제도의 실시로 출정하는 '군인의 유가족을 지키고 훗날 걱정을 하지' 않도록 설립되었던 것이며, 총후봉공회의 역할은 '군인 유가족을 돌보는'(=위문, 위자) 정신적 군사원호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결코 생활에 염려가 없도록'(=생업부조) 하는 경제적인 군사원호를 하는 데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1944년 9월 16일자 『매일신보』 2면을 보면 "지금까지 경성부에서는 원호 대상의 대부분이 내지인들뿐이었든 관계로 원호정신을 보급시키는 데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경성부에서는 징병 청년이 다수 출진함에 따라 군인가족의 원호사업과 군인정신의 보급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도록 총후봉공회를 설치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조선총독부는 전몰자 유가족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군사원호사업을 통해 전몰자유가족과 조선인 남자를 황국신민화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총후봉공회는 징병제도의 실시에 의한 군사원호 대상자의 증가를 고려하여 내지의 인보상부(隣保相扶)에 근거한 총후원호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등장했지만, 총후봉공회가 설립되는 시점이 패전의 기색이 농후한 1944년 8월 무렵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Ⅴ. 맺음말

본 연구는 식민지조선에서 실시된 군사원호정책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군사부조법에 의한 군사원호에 초점을 맞추고 육군특별지원병제도의 실시 전과 실시 후, 징병제도의 공포 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군사원호의 추이에 주목하면서 군사원호사업을 전몰자유가족과 관련하여 고

www.kci.go.kr

찰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37년 7월에 조선군사후원연맹을 설립하였다. 그 이유는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호적상의 문제로 군사부조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와 군사부조법의 적용을 받을지라도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군사원호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조선군사후원연맹은 '황군의 사기를 고무 격려하기' 위하여 군사원호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출정군인 가족과 전몰자유가족에게 정신적 원호와 경제적 원호를 실시하였다. 또한 1938년 8월에는 경기도중앙군사원호상담소를 설치하여 군사원호사업의 일환으로 직업자금과 유족부조료의 알선이라는 경제적 원호에 주안을 둔 군사원호를 실시하였다. 이 시기의 식민지조선에서의 군사원호 대상자는 조선에 거주하였던 '내지인'=일본인 군인이었다.

그러나 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실시된 후 1939년 9월에는 교원 양성소를 설치하여 조선인의 군인·군속 및 조선 내에 거주하는 전몰자유가족을 입소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인에게도 군사부조법을 적용하여 군사원호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몰자유가족에게 생업을 주기 위해 수산소가 설치되었다. 수산소의 설치는 '전몰자 미망인'이 근로를 통해 자립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나 그 이면에는 출정한 군인의 아내나 어머니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전몰자유가족의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이 의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41년 9월 시점에서 보면 조선에서의 군사부조법에 의한 군사원호 대상자는 육군특별지원병 가족을 제외하고 조선에 거주하는 '내지인' 군인 가족 및 전몰자유가족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조선의 군사원호사업은 군사부조법의 운용에 따르는 생활부조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수산소를 확충하여 전몰자유가족의 경제적인 자립을 강조하며 생업부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www.kci.go.kr

식민지조선에서 군사원호가 강화되고 확대되는 계기는 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인 군속 중에 다수의 전몰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사원호가 더욱 확대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징병제실시에 있었다. 징병제가 시행되면 조선에서 징집되는 자는 상당수에 달할 것이고, 이로 인해 군사원호의 대상자 또한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징집 대상자의 증가는 군인 유가족에 대한 원호의 증대로 이어지므로 군인원호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전몰자유가족의 정신적 원호의 측면에서 정신교화도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내지와 마찬가지로 출정군인이 후일의 염려 없이 '진충보국'에 전념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는 징병제 시행을 앞두고 '과부의 정신지도'라는 이름으로 '미망인'이 전몰자유가족으로서 '긍지'를 계속 갖도록 하는 정신교화가 필요하다고 거론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처럼 조선총독부는 전몰자유가족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군사원호사업을 지원한다는 목적하에 전몰자유가족까지도 황국신민화하고자 하였음을 지적한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식민지조선에서의 군사원호정책을 심도 있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징병제도 시행 이후 조선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군사원호를 전개했는지에 주목하여 실증자료에 의한 구체적인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0년 4월 18일
논문 심사일 : 2020년 5월 22일
게재 확정일 : 2020년 5월 22일

www.kci.go.kr

참고문헌

『동아일보』『매일신보』『朝鮮社会事業』『通報』『同胞愛』

愛国婦人会朝鮮本部,『北支事変に対する軍事後援事業要領』, 1937.

愛国婦人会朝鮮本部,『分区班制実施の栞』, 1937.

軍人援護会京城府分會,『京城だより』, 1944.

朝鮮軍事後援聯盟,『軍事後援聯盟事業要覽』, 1939.

朝鮮總督府,『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37.

朝鮮総督府,『朝鮮総督府帝国議会説明資料』, 不二出版, 1994.

戦前・戦中期アジア研究資料1『植民地社会事業関係資料集』朝鮮編 38, 社会事業政策ー軍事援護事業2, 近現代資料刊行会, 2000.

김인수,『致齋日記』2, 한국정신문화연구, 1994.

민족문제연구소 편,『총동원정책과 단체 4』, 일제하 전시체제기 정책사료총서 52권, 2001.

박윤하,『식민지 시기 '애국부인회조선본부'의 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신영희,「전시체제기 애국부인회 조선본부의 군사후원사업과 애국자녀단」,『지역과 역사』30호, 2012.

尹晟郁,『植民地朝鮮における社会事業政策』, 大阪経済法科大学出版部, 199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치재일기&ridx=0&tot=399 (검색일: 2020. 6. 11.)

www.kci.go.kr

Abstract

Military Relief and Bereaved Families of Fallen Soldiers in Joseo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Wartime

Hyun-Ah Kim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the trend of military relief over the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Army Special Volunteer System and in the run-up to the Japanese conscription of Koreans into the armed forces by looking at military relief programs under the Service Members Relief Act. In particular, the study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military relief disguised Japan's attempt for spiritual education and imperialization of bereaved families of fallen soldiers.

Reportedly, the sheltered workshop was set up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wives of fallen soldiers but the true intention was to encourage them to proud as a bereaved family by making them a role model for other wives and mothers of men in services.

As the number of Korean conscripts increased in the run-up to the Japanese conscription of Koreans into the armed forces, there was a recognition of possible increase in bereaved families of fallen soldiers and growing importance of spiritual education of such families. In this regard, this study intended to point ou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imed to make the bereaved families imperial subjects of Japan under the disguise of moral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m.

www.kci.go.kr

Key words

Joseo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military relief, military relief program, Service Members Relief Act, bereaved family of fallen soldiers, spiritual education

www.kci.go.kr